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3602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준동, 박환택, 홍성필, 김말금, 최단비, 이준석

피고 1. A

2.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469,814원 및 그 중 13,992,828원에 대하여 2024. 4. 25.부터, 2,461,716원에 대하여 2024. 5. 16.부터, 9,609,570원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각 2024. 9. 25.까지 연 7%,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11. 29. 접수 제1776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소장 부분 송달일: A 2024. 9. 25.).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조형우

별지